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67호 2015. 9. 1. (화)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57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정선군 규칙 제1258호 정선군 환지정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 8
- 정선군 규칙 제1259호 정선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 1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 규 칙

2015년도 제7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일

###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57호

####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과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로 한다)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한다.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시한다.
3. 협력사업비의 세출예산은 특정사업에 편성한 경우에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의 계약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별표】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계		100
	소 계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평가기관(6점)</li> <li>- 국내평가기관(4점)</li> </ul> <p>*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p>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본비율(7점)</li> <li>*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li> <li>- 고정이하여신비율(7점)</li> <li>- 자기자본 이익률(6점)</li> <li>- 원화유동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1점)</li> <li>*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li> <li>*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li> </ul>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p> <p>나.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p> <p>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p>	
	소 계	20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p>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p> <p>*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점)</p>	
	소 계	2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p> <p>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4점)</p> <p>*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9

\* 각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주민 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생 략)

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 ③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  
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  
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  
다.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  
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한다.

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시  
한다.

3. 협력사업비의 세출예산은 특정사업에 편  
성한 경우에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  
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  
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가 2014. 12. 30. 개정되어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금고지정 업무 취급 등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시 회계연도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가능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
- 협력사업비 운용 및 공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규정 신설(안 제11조제4항)
-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음.

2015년도 제7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환지 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일

##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58호

###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을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5항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본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를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통지일로부터”를 “납부통지일부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일자”를 “날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를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가일로부터”를 “인가일부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과오불”을 “착오지급”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52 조제5항에 의한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u>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 제37 조제5항에 따른----- -----.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 청산금 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청 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u>이 규칙</u>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납부통지) ① ----- ----- <u>제26조제6항에 따른</u> 인가가 있는 날부터----- -----.  ② ----- <u>납부통지일부터</u>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 ----- <u>날부터</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u>따른</u> -----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생 략)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수령장소 및 일자

3. · 4. (생 략)

③ 교부금은 법 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 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0조(부채자 등에 대한 교부) ① (생 략)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간(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날짜

3. · 4. (현행과 같음)

③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  
-----  
-----  
-----.  
--해당--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부채자 등에 대한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가일  
부터-----  
-----  
-----해당-----.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  
-----착오지급-----  
-----.

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

-----

-----.

**개 정 이 유**

-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규칙 제명 띄어쓰기: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용(안 제1조, 제5조, 제8조)
  - 제52조제5항 → 제37조제5항
  - 제41조제6항 → 제26조제6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

2015년도 제8회 정선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이장 임명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일

##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59호

### 정선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
-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4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② 리에서 읍장·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1부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③ 읍장·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제3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임명한다.

제5조(해임) 읍장·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3. 임기 중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

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제6조(보고) 읍장·면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읍장·면장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읍장·면장이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적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의 투명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이장 임명자격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장 임명에 객관성을 확보  
(안 제2조 ~ 제3조)
- 이장 임명절차와 해임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5조)
- 이장의 임기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되 읍·면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  
(안 제7조)
-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 조문 정비